

2025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신복순

2025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24년 11월 27일

○ 회부일자 : 2024년 11월 27일

3. 제안이유

- K-바이오 스퀘어 조성 사업은 국가 제4차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('23~'32)에 반영되어 있는 정부 주도 사업으로,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내에 조성 예정임.
-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(LH)와 필요부지 및 위치, 용지매입계획 협의를 완료하였으며, 그중 1단계 부지에 대해 취득을 하고자 함.
- 부지 취득을 위해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의2 및 「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- 재산의 취득 : 1단계 K-바이오 스퀘어 조성 부지 매입 일반회계
- 용 도 : 1단계 K-바이오 스퀘어 조성 예정부지 취득
- 위 치 :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봉산리 511-2, 518-1, 496
- 매입규모 : 53,291㎡, 3필지 ※ 1~3단계 총면적 : 607,947㎡
- 매입기간 : '25년 ~ '26년(2년)
- 소요예산 : 710억원(도 355억원, 청주시 355억원)

※ 단계별 도비소요액 (억원)

1단계		2단계				3단계		합계
'25	'26	'27	'28	'29	'30	'31	'32	
104	251	389	594	795	562	454	308	3,457

- 계약방법 : 한국토지주택공사(LH)와 수의계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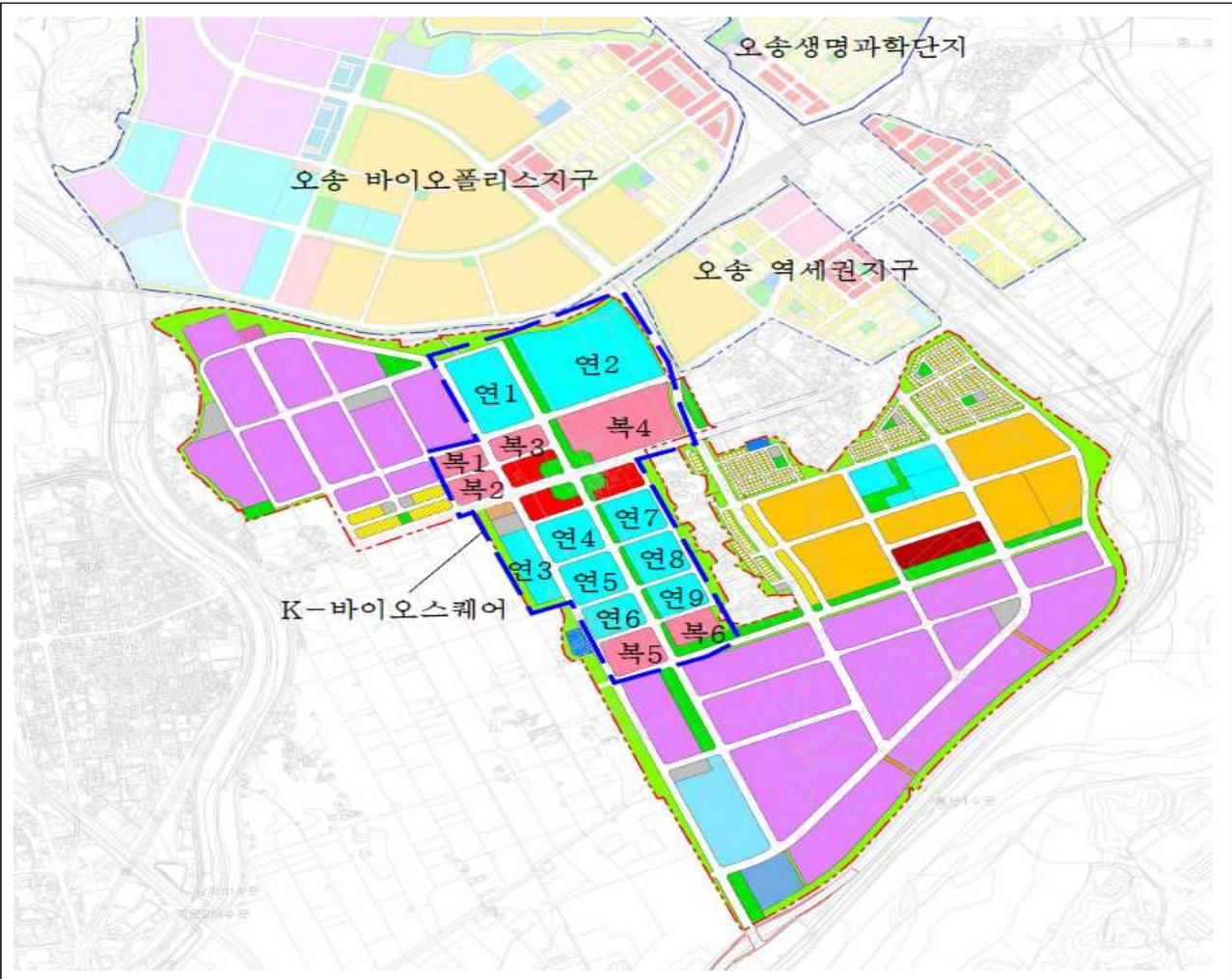
5. 검토의견

- 이번 계획안은 “1단계 K-바이오 스퀘어 조성 부지 매입”으로 취득 1건임.
- “1단계 K-바이오 스퀘어 조성 부지 매입”의 건은,
 -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봉산리 511-2 소재 면적 16,348㎡ 부지(토지이용계획도(안) 북1),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봉산리 518-1 소재 면적 18,400㎡ 부지(토지이용계획도(안) 북2),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봉산리 496 소재 18,543㎡ 부지(토지이용계획도(안) 북3), 등 3필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, 소요예산은 710억원(도 355억원, 청주시 355억원)임.

【위치도】



【토지이용계획도(안)】



○ “K-바이오 스퀘어 조성 사업”은,

- 세계 최고 원천기술력 개발, 첨단바이오 기술 자립, 첨단바이오 혁신 허브 조성 등을 목적으로,
- 2025년부터 2037년까지(1단계 : ‘25년~‘29년, 2단계 : ‘30년~‘33년, 3단계 : ‘34~‘37), 총사업비 2조7천6백억원(국비 1조9,343억원, 도비 및 시비 6,900억원, 민자 1,357억원)을 투입하여,
-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에 KAIST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를 중심으로 산·학·연·병이 연계되는 바이오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임.

○ 본 건 “1단계 K-바이오 스퀘어 조성 부지 매입”은,

- 2025년부터 2032년까지(1단계 : ‘25년~‘26년, 2단계 : ‘27년~‘30년, 3단계 : ‘31년~‘32년), 총 소요예산 6,914억원(도비 3,457억원, 청주시 3,457억원)을 투입하여 진행되는 전체 부지 매입 계획 중,
- 1단계 K-바이오 스퀘어 조성 사업의 추진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, 소요예산은 710억원(도비 355억원, 청주시 355억원).
- K-바이오 스퀘어 조성 사업은 세계적으로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첨단바이오 분야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고,
-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(LH)와 본 건 부지에 관하여 2025년부터 매입을 시작하기로 협의가 완료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, 특별한 이견 없음.
- 다만, 향후 제3생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된 이후 대상 부지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

의2제3항, 「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제12조제1항에 따라
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할 것이고,

- 또한 본 건의 부지는 전체 3단계 사업 중 1단계에 해당하는 사
업의 부지를 위한 것이므로, 향후 2단계 및 3단계 사업을 위한
부지 매입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
요하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.